

2005년 5월 31일 (조간)부터 사용해 주십시오



- ▶ 2005. 5. 30 배포
- ▶ 총 3 쪽

보 도 자 료

- ▶ 외국인력정책과 이도영 서기관
T E L : 2110-7080
E-MAIL : epd01@chol.com
F A X : 502-6855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**“『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』 개정
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제한기간이 현행
1년에서 6월로 단축 ”**

- 중소기업체의 숙련 외국인력 안정적 고용이 가능해져, 고용
허가제 외국인력 수요 늘어날 듯 -

□ 2005. 5. 31(화)부터 『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』 이
개정되어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제한기간이 현행 1년에서 6
월로 단축된다.

※ 법률 개정 前에는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는 본국으로
출국 후 1년(재취업제한기간)이 경과해야만 재입국(취업)이 가능하였음

○ 또한, 재취업제한기간에 특례를 두어 3년 근무 후 출국하는
외국인근로자 중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는 자는

- 6월의 기간을 더 단축 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재입국(취업)이
가능해짐으로써 숙련인력 계속 고용의 길이 열린다.

※ 단축되는 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인 바 1월 이상으로 할 예정

- 재취업제한기간 특례규정으로 재고용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**한국어능력시험**(’05.8월 이후 실시 예정)과 **외국인취업교육**이 면제된다.

□ 개정 前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취업에 따른 정주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, 1년의 재취업 제한기간을 두고 있었는데

- 동 취업제한기간을 **장기간**으로 인식한 근로자들이 일단 출국하면 재입국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**자진출국**을 기피하고 불법체류자로 남는 문제가 있었으며

※ ’05년 8월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해야하는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(약 10만명, ’03. 9월~11월 합법화 조치 시행)의 88%가 불법체류자로 전락

- 또한, **숙련 인력의 안정적 · 장기간 고용**을 원하는 산업 현장의 인력 운용 요구에도 부합되지 않아 고용허가제 활용의 **저해요인**으로도 작용하였다.

□ 금번 재취업제한기간 단축 및 특례기간 신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, 산업현장에서 숙련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장기간 고용할 수 있게 되어 **기업의 경쟁력 제고**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

- 외국인근로자의 자발적인 귀국과 재입국 유도, 효과적인 고용관리로 사업장 이탈 및 불법체류 감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된다.

※ 실제로 자진출국 시 재취업제한기간을 단축(1년 → 6월)하고 재취업 기회를 부여한다는 정부의 정책(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자진출국유도 방안, 3.16) 발표 이후 이들의 자진출국율이 41.2%로 증가하고 있음

- ’05.5.23 현재 출국대상자 51천명중 21천명이 자진출국함. (불법 체류자 10천명 자진출국 별도)

- 한편 고용허가제 각종 실적이 지난 3월 이후 증가하고 있는데, 이는 사용자의 고용허가제 이용 편의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.

(1일 평균)

	2004년	2005.2이전	2005.3	2005.4.	누 계
외국인 구인신청	166	131	440	529	48,710
고용허가서 발급	98	73	267	390	31,496

※ 신규도입 인원은 9,210명(고용특례자 66백명 별도)

<제도 개선 추진 현황>

- 10인 이하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확대(2명→5명) <'05.3.2>
 - 내국인구인노력 의무기간 단축(1월→7일~3일) <'05.3.12>
 - 국내 최초 도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(3월)제도 활용 <'05.4.1>
 - 1사업장 1제도 원칙 폐지 추진 <6월중 시행예정>
 - 재취업제한기간 단축(1년→6월) 및 특례규정 신설 <'05. 5.31일 공포>
- 6월 중에 『1사 1제도 원칙』 폐지로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선택권이 넓어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을 함께 고용할 수 있게 되고,
- 재취업제한기간 단축 등으로 숙련인력 재고용이 용이하게 될 경우 고용허가제 수요는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.